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7. 23.

행정위원회

## 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(2008. 7. 18) 상정 의결

## 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송요철)

### 가. 제안이유

-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병 질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전담부서를 신설
- 관내 거주외국인 증가와 여의도에 대규모 국제금융 빌딩 신축으로 통상·금융·주거·복지 등의 신규행정수요가 예상되며, 미국, 일본 등 선진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
- 여의동, 신길동, 대림동 등 관내 전지역의 노후·낙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
- 지역주민의 교육관련 업무 전담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### 【 부서신설 】

- 행정국에 국제지원과(외국인지원팀, 국제금융팀, 대외협력팀)를 신설하여 외국인관련 업무를 총괄
- 도시환경국에 주택과(주택행정팀, 주택개발팀, 주택정비팀, 도시개발팀)를 신설하여 재건축, 재개발, 무허가 등 공동주택관련 업무를 총괄
- 보건소에 보건지원과(보건행정팀, 건강도시팀, 방역팀, 보건민원팀)를 신설하여 보건소 운영·관리업무를 총괄

### 【 부서명칭 변경 】

- 주택관련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도시경관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
- 보건지원과 신설로 보건·의료분야와 위생분야가 분리되므로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명칭 변경
- 직속기관(국) 변경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

### 【 직속기관 변경 】

- 부구청장 직속기관인 교육지원담당관을 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변경

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욱)

- 본 조례안은 외국인 관련 업무,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, 보건소 운영·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조직개편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며,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은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잦은 측면은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4. 修正案 要旨

##### 가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교육지원과의 설립 취지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산 정보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 건제순을 수정함.

##### 나. 수정골자

- 제5조 제1항 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”를  
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.”로 한다.

#### 5. 審査結課：修正案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번호	150
----------	----------	-----

발 의 일 자 : 2008. 7.18  
발 의 자 : 윤동규 위원

## 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교육지원과의 설립 취지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산 정보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 건제순을 수정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제5조 제1항 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”를  
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.”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5조 제1항 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”를  
“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.”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행정국) ①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<u>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행정국) ①..... .....<u>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병 질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전담부서 신설
- 관내 거주외국인 증가와 여의도에 대규모 국제금융 빌딩 신축으로 통상·금융·주거·복지 등의 신규행정수요가 예상되며, 미국, 일본 등 선진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
- 여의동, 신길동, 대림동 등 관내 전지역의 노후·낙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며
- 지역주민의 교육관련 업무 전담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<부서신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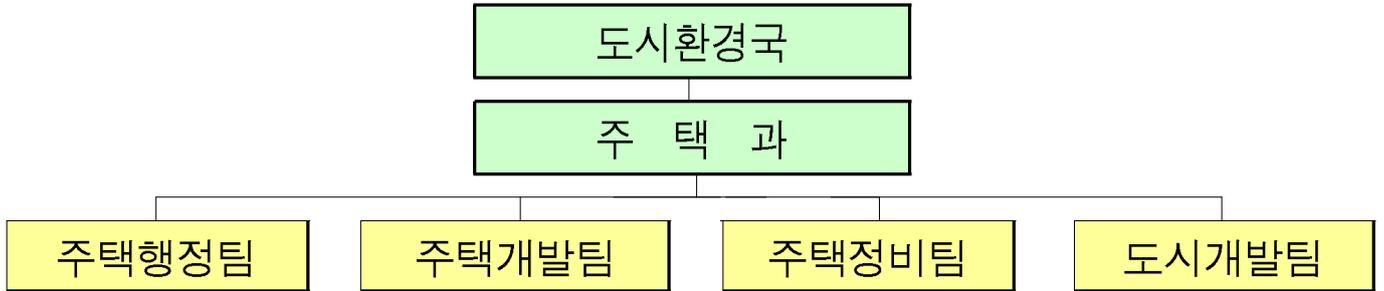
#### ① 국제지원과

- 수행업무 : 외국인관련 업무 총괄
- 기구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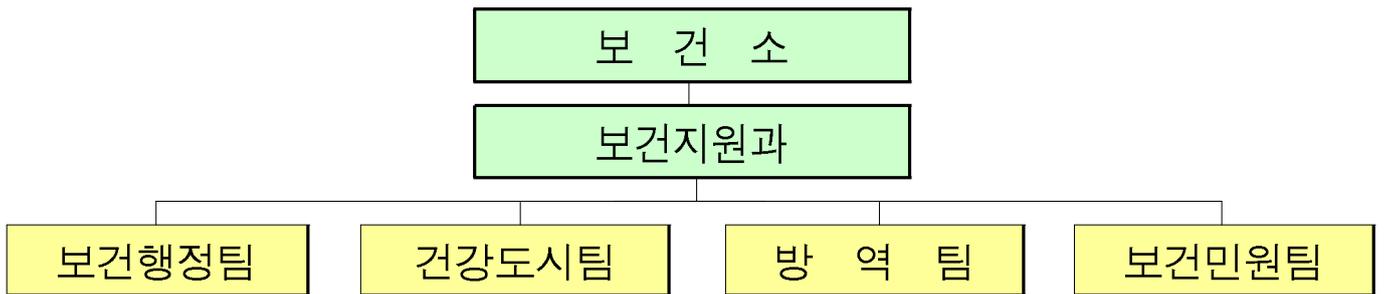
## ② 주택과

- 수행업무 : 재건축, 재개발, 무허가 등 공동주택관련 업무 총괄
- 기구현황



## ③ 보건지원과

- 수행업무 : 보건소 운영·관리업무 총괄
- 기구현황



### <부서명칭 변경>

변경 전	변경 후	사유
도시경관과	도시계획과	주택관련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업무만 수행하므로 명칭변경
보건위생과	위생과	보건지원과 신설로 보건·의료분야와 위생분야가 분리되므로 명칭변경
교육지원 담당관	교육지원과	직속기관(국) 변경에 따라 명칭변경

### <직속기관 변경>

조 정 전		⇒	조 정 후	
직속기관(국)명	부 서 명		직속기관(국)명	부 서 명
부구청장	교육지원담당관	행정국	교육지원과	

### 3. 참고사항

가.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~⑥ :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.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08. 6. 5 ~ 6. 10)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조에”를 “제13조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감사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을”을 “감사담당관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

제5조제2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17.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
18.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
19.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 중 “도시경관과”를 “주택과, 도시계획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 보건소에 보건지원과, 건강증진과, 의약과 및 위생과를 둔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마목을 삭제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“교육지원담당관”을 “교육지원과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도시경관과장”을 도시계획과장“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도시경관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도시경관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보건위생과장”을 “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<b>제10조에</b> 따라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..... ..... ..... <b>제13조에</b> ..... ..... .....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<b>감사담당관</b> 과 <b>교육지원담당관</b> 을 둔다.	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<b>감사담당관</b> 을 둔다.
제5조(행정국) ① <b>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(여유기구), 민원여권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</b>  ② (생략) 1.~15호(생략).  <b>&lt;신설&gt;</b> <b>&lt;신설&gt;</b> <b>&lt;신설&gt;</b> <b>&lt;신설&gt;</b>	제5조(행정국) ① <b>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기획홍보과, 주민자치과, 민원여권과, 교육지원과,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.</b>  ② (현행과 같음) 1.~15호(현행과 같음)  <b>16.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</b> <b>17.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</b> <b>18. 과학육성에 관한 사항</b> <b>19. 외국인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</b>
제8조(도시환경국) ① 도시환경국에 <b>도시경관과</b> 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.	제8조(도시환경국) ① 도시환경국에 <b>주택과, 도시계획과</b> 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.
제12조(보건소) ① 보건소에 <b>보건위생과</b> , 건강증진과 및 의약과를 둔다.	제12조(보건소) ① 보건소에 <b>보건지원과</b> , 건강증진과, 의약과 및 위생과를 둔다.